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5.

발 의 자 : 이인영 · 채현일 · 전진숙
이강일 · 김용만 · 강준현
박상혁 · 민병덕 · 김남근
정일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다양한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.

한편,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,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소비자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3항).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제1절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금융소비자단체) 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가 조직한 단체(이하 “금융소비자단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

1.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
 2. 금융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·연구
 3. 금융소비자의 교육
 4. 금융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·정보제공
 5.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개정 요청
 6. 그 밖에 금융소비자 관련 문제 해결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- ② 금융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금융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1.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출

것

2.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는 것

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

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금융소비자단체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소비자단체(이하 “등록금융소비자단체”라 한다)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,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⑦ 국가는 등록금융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절차 및 방법,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제3항제2호 중 “한국소비자원 및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”를 “한국소비자원,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등록금융소비자단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32조의2(금융소비자단체) ① 금 용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가 조직한 단체(이하 “금융소비자단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</u> <u>2. 금융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 사·연구</u> <u>3. 금융소비자의 교육</u> <u>4. 금융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·정보 제공</u> <u>5.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개정 요청</u> <u>6. 그 밖에 금융소비자 관련 문 제 해결에 필요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</u> <p><u>② 금융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금융소비자 권 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 아 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</u></p>

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출 것

2.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

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
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금융소비자단체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금융소비자단체(이하

<p>2.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른 <u>한</u> <u>국소비자원</u> 및 <u>같은 법에 따</u> <u>라 등록된 소비자단체</u>의 임 원,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 람 또는 15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	<p>2. -----<u>한</u> <u>국소비자원</u>, <u>같은 법에 따라</u> <u>등록한 소비자단체</u> 및 <u>등록금</u> <u>용소비자단체</u>----- ----- -----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--	--